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2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80,619,000	20,418,570
일반회계	458,400,000	13,752,000
특별회계	222,219,000	6,666,570
기타특별회계	222,219,000	6,666,57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88,929	32,668
주차장특별회계	495,928	14,878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703,492	81,10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4,299,538	4,328,986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606,884	48,207
치수사업특별회계	212,207	6,36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39,547	4,186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71,671,106	2,150,133
도시개발특별회계	1,369	4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070,477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